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하는 영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,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,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옥외장소 또는 옥외시설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등(안 제2조)

- 입법 취지는 건축물 실내의 영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옥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.

나.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적용(안 제9조의4)

-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“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”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고, 그 평가 결과는 매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함.

다.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(안 별표6)

- 1)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*

*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참조하여 개선(권익위, 법제처)

- 2)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, 비상구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 등 과태료 부과시 차수별 부과금액*을 조정

* 「과태료 금액 지침(법제처)」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설정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
(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% 이상에서 설정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도 30% 이상에서 설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.

제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

제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

별표 6 제1호가목 전단 중 “부과기준”을 “가중된 부과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6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가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제2호2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4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4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5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5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부터 같은 호 위반행위 3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까지 중 “50”을 각각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3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중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바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바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2호 위반행위 사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사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아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아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자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자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차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차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차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3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한다.

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아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자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1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란 “10”을 “1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차목2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란 중 “1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한다. 별표 6 제2호차목3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란 중 “30만원”을 “120만원”으로, 같은 란 중 “3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차목4)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란 본문 중 “120만원”을 “180만원”으로, 같은 란 본문 중 “6만원”을 “3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하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하목의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다중이용업)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2조(다중이용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.</u>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4(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)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“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9조의4(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 <u>위험평가</u>
3. · 4. (생략)	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	② ----- ----- -----

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「보험업법」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1. · 2.</u>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평가 결과</u> <u>2. · 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화재예방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53